

醫療法改正案(全)

□□改正理由□□

1962년 3월 20일 現行 醫療法이 制定公布된 以來 10餘年이 經過하는 동안 社會與件이 變化되었을 뿐만 아니라 醫療機關의 地域의 偏重, 應急患者의 診療拒否, 醫療報酬의 不適正 등 醫療에 關한 여러 가지 社會的 問題를 惹起시킴으로써 國民醫療를 沮害하는 重要한 要因이 되고 있으므로 變化된 現實에 副應하고 나아가서는 醫療人으로 하여금 維新課業의 總和의인 前進隊列에서 國民을 위한 進取의 姿勢를 確立하도록 醫療에 關한 制度의인 矛盾을 是正하고 醫療秩序를 確立하기 위하여 醫療法을 全般的으로 改正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① 專門의이고 技術의인 醫療行爲의 範圍와 醫療人 種別 業務限界를 審判하게 하기 위하여 醫療人으로 構成되는 醫療審判委員會를 두고, 그 醫療審判委員會의 決定은 關係人과 關係機關을 頑束하도록 함(案第4條). ② 保健社會部長官이 國民保健施策上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新規로 免許되는 醫療人에게 一定期間을 定하여 特定地域 또는 特定業務에 從事할 것을 條件으로 할 수 있게 함(案第11條). ③ 病院의 開設은 그 地域의 醫療需要를 勘案하여 所要病床數를 超過할 때에는 그 開設을 制限하도록 하며 그 開設은 許可制로 함(案第30條). ④ 醫療人이 아닌 個人이 醫療機關을 開設할 수 있는 制度를 廢止하고 醫院·齒科醫院·漢醫院 및 助產所는 醫療人만이 開設하게 하며, 病院은 醫療法人만이 開設하도록 함(案第30條·第31條). ⑤ 醫療機關의 種別에 漢方病院과 助產所를 通追함(案第3條). ⑥ 醫療補助員制를 醫療技士制로 轉換하게 될에 따라 看護補助員에 關한 事項을 醫療法에서 規制함(案第37條). ⑦ 醫療廣告禁止에 關한 規制를 補強함(案第46條·第47條). ⑧ 醫療施策上 必要할 때에는 醫師뿐만 아니라 全醫療人에 對하여 醫療業務를 嘴託할 수 있게 함(案第46條). ⑨ 罰金을 強化함(案第66條 乃至 第70條). ■ 參考事項 ⑩ 關係法令 : 省略 ⑪ 豫算措置 : ⑫ 合議 : 法務部·商工部와 合議됨 ⑬ 其他 :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國民醫療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醫療의 適正을 期하여 國民의 健康을 保護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醫療人) ①이 法에서 「醫療人」이라 함은 保健社會部長官의 免許를 받은 醫師·齒科醫師·漢醫師·助產員 및 看護員을 말한다.

②醫療人은 그 種別에 따라 다음 각號의 任務를 途行함으로써 國民保健의 向上을 圖謀하고 國民의 健康한 生活確保에 寄與함을 使命으로 한다.

1. 醫師는 醫療와 保健指導에 從事함을 任務로 한다.

2. 齒科醫師는 齒科醫療 및 口腔保健指導에 從事함을 任務로 한다.

3. 漢醫師는 漢方醫療에 從事함을 任務로 한다.

4. 助產員은 助產과 婦產·解產婦·產褥婦 및 新生兒에 대한 保健과 養護指導에 從事함을 任務로 한다.

5. 看護員은 傷病者 또는 解產婦의 療養上の 看護 또는 診療의 補助에 從事함을 任務로 한다.

第3條 (醫療機關) ①이 法에서 「醫療機關」이라 함은 醫療人이 公衆 또는 特定多數人을 위하여 醫療·助產의 業(以下 「醫療業」이라 한다)을 行하는 곳을 말한다.

②醫療機關의 種別은 綜合病院·病院·齒科病院·漢方病院·醫院·齒科醫院·漢醫院 및 助產所로 나눈다.

③「綜合病院」이라 함은 醫師 및 齒科醫師가 醫療를 행하는 곳으로서 入院患者 80人以上을 收容할 수 있는 施設을 갖추고 診療과목이 적어도 一般內科, 一般外科, 小兒科·產婦人科·放射線科·麻醉科·病理科·健康管理科 및 齒科가 設置되어 있고 각과마다 必要한 專門醫를 갖춘 醫療機關을 말한다.

④「病院」·「齒科病院」 또는 「漢方病院」이라 함은 醫師·齒科醫師 또는 漢醫師가 각각 그 醫療를 行하는 곳으로서 入院患者 20人以上을 收容할 수 있는 施設을 갖춘 醫療機關을 말한다. 다만 齒科病院의 境遇에는 그 入院施設의 制限을 받지 아니한다.

⑤「醫院」·「齒科醫院」 또는 「漢醫院」이라 함은 醫師·齒科醫師 또는 漢醫師가 각각 그 醫療를 行하는 곳으로서, 診療에 支障이 없는 施設을 갖춘 醴療機關을 말한다.

⑥「助產所라」함은 助產院이 助產과 妊婦·解產婦·產褥婦 및 新生兒에 대한 保健과 養護指導를 行하는 곳으로서, 助產에 支障이 없는 施設을 갖춘 醴療機關을 말한다.

第4條 (醫療審查委員會) ①保健社會部長官이 附設하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議決하고 保健社會部長官의 諮問에 應하여 醴療에 관한 重要한 事項을 調査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保健社會部長官 所屬下에 醴療審查委員會(以下「審查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1. 醴療人이 行하는 醴療·助產·看護 등 醴療技術의 施行(以下「醫療行爲」라 한다)의 範圍
 2. 醴療人種別에 따르는 業務限界
 3. 其他 醴療에 관한 專門的이고 技術的인 事項
- ②審查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과 審查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2章 醴療人

【第一節 資格과 免許】

第5條 (醫師·齒科醫師 및 漢醫師의 免許) 醫師·齒科醫師 또는 漢醫師가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資格을 가진者로서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該當國家試驗에 合格한 後 保健社會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1. 醴學 또는 齒科醫學을 專攻하는 大學을 卒業하고 醴學士 또는 齒科醫學士의 學位를 받은 者.
2. 漢方醫學을 專攻하는 大學을 卒業하고 漱醫學士의 學位를 받은 者.
3. 保健社會部長官이 認定하는 外國의 第1號 또는 第2號學校를 卒業하고 醴學士·齒科醫學士 또

는 漱醫學士의 學位를 받은 者.

4. 保健社會部長官이 認定하는 外國의 醫師·齒科醫師 또는 漱醫師의 免許를 받은 者.

第6條 (助產員의 免許) 助產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로서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免許를 받아야 한다.

1. 看護員의 免許를 가지고 保健社會部長官이 認定하는 醴療機關에서 1年間 助產의 修習課程을 마친 者.
2. 保健社會部長官이 認定하는 外國의 助產員의 免許를 받은 者.

第7條 (看護員의 免許) 看護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로서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看護員國家試驗에 合格한 後 保健社會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1. 看護學을 專攻하는 大學·專門學校 또는 看護學校를 卒業한 者.
2. 保健社會部長官이 認定하는 外國의 第1號의 學校를 卒業하거나 看護員의 免許를 받은 者.

第8條 (缺格事由등) ①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醴療人이 될 수 없다.

1. 精神病者·心身薄弱者
2. 聾者·啞者·盲者
3. 醴療人으로서 不適合하다고 認定되는 不具廢疾者와 麻藥其他有毒物質의 中毒者
4. 禁治產者·限定治產者·破產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5. 禁錮以上의 刑을 받고 그 刑의 執行이 終了되지 아니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되지 아니한 者

②禁錮以上의 刑에 該當하는 罪를 犯하여 起訴中에 있는 者가 國家試驗에 合格한 때에는 그 確定判決이 있을 때까지 免許를 留保한다.

第9條 (國家試驗) ①醫師·齒科醫師·漢醫師 또는 看護員의 國家試驗은 每年 保健社會部長官이 이를 施行한다.

②第1項의 國家試驗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0條 (應試資格의 制限 등) ①第8條 第1項 各號의 該當하는 者 또는 禁錮以上刑에 該當하는 罪를 犯하여 起訴中에 있는 者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試驗에 應試할 수 없다.

②不正한 方法으로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試驗에 應試한 者 또는 國家試驗에 關하여 不正行爲를 한 者에 대하여는 그受驗을 停止시키거나 그 合格을 無効로 한다.

③第2項의規定에 의하여受驗이停止되거나合格이無効로된者는그後2回에限하여第9條의規定에의한國家試驗에應試할수없다.

第11條(免許의條件 및登錄) ①保健社會部長官은保健醫療施策上必要하다고認定될때에는第5條乃至第7條의規定에의한免許에있어서2年以內의期間을定하여特定地域 또는特定業務에從事할것을免許의條件으로불일수있다.

②保健社會部長官은第5條乃至第7條의規定에의한免許를할때에는그免許에關한事項을登錄臺帳에登錄하고免許證을交付하여야한다.

③第2項의登錄臺帳은醫療人의種別에따라作成備置하여야한다.

④免許의登錄과免許證에關하여必要한事項은保健社會部令으로定한다.

【第2節 權利와義務】

第12條(醫療技術에대한保護) 医療人의醫療行爲에대하여는이法또는다른法令에특히規定된境遇를除外하고는누구든지이에干渉하지못한다.

第13條(醫療器材의押留禁止) 医療人의醫療業務에必要한器具·藥品其他材料는이를押留하지못한다.
第14條(器具등의優先供給) ①医療人은医疗行爲를위하여必要한器具·藥品其他施設및材料에대하여優先적으로供給받을權利를가진다.
②第1項의權利에附隨되는物品·勞力과交通手段에대하여도第1項과同一한權利를保有한다.

第15條(營業稅免除) 医療人의醫療業에대하여는營業稅를免除한다.

第16條(診療의拒否禁止等) ①医療人은診療또는助產의要求를받은때에는正當한理由없이이를拒否하지못한다.

②医療人은救急患者의應急處置를保健社會部令이定하는바에의하여即時施行하여야한다.

第17條(摘出物등의處理) 医療人은medical行爲에따라身體로부터摘出되거나切斷된死胎兒·臟器其他모든物體를保健社會部令으로定하는바에의하여處理하여야한다.

第18條(診斷書등) ①医療業에從事하고自身이診察또는檢査한醫師·齒科醫師또는漢醫師가아니면診斷書·檢査書또는證明書를交付하지못한다.

다만診療中이던患者가最終診療時로부터24시간以內에死亡한境遇에는다시診察하지아니하더라도診斷書또는證明書를交付할수있다.

②医療業에從事하고自身이助產한醫師·漢醫師또는助產員이아니면出生·死亡 또는死產의證明書

를交付하지못한다.

③醫師·齒科醫師또는漢醫師는그가診察또는檢査한것에대한診斷書·檢査書또는證明書의交付要求가있을때에는正當한理由없이이를拒否하지못한다.

④醫師·漢醫師또는助產員은그가助產한것에대한出生·死亡 또는死產의證明書의交付要求를받은때에도第3項과같다.

第19條(秘密漏泄의禁止) 医療人은이法또는다른法令에서특히規定된境遇를除外하고는그醫療·助產 또는看護에있어서知得한他人의秘密을漏泄하거나發表하지못한다.

第20條(記錄閲覽등) ①医療人은이法또는다른法令에서특히規定된境遇를除外하고는患者에관한記錄을閲覽시키거나그記錄의內容探知에應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同一한患者의診療上의必要에의하여다른醫療機關에서그記錄의閲覽을要求할境遇에는이에應하여야한다.

②医療人은應急患者를다른醫療機關에移送할때에는患者移送과同時에初診記錄을交付하여야한다.

第21條(診療記錄簿등) ①医療人은各各診療記錄簿·助產記錄簿또는看護記錄簿을備置하여그medical行爲에관한事項과所見을詳細히記錄하고署名하여야한다.

②第1項의規定에의한診療記錄簿·助產記錄簿또는看護記錄簿는적어도10년間이를保存하여야한다.

第22條(療養方法의指導) 医療人은患者또는그保護者에대하여療養의method其他健康管理에necessary한事項을指導하여야한다.

第23條(申告) ①医療人은大統領이定하는바에의하여每年그實態와就業狀況등을保健社會部長官에게申告하여야한다.

②医療인이死亡한때에는그相續人은死亡한날로부터30日以內에그事實을保健社會部長官에게申告하여야한다. 다만,相續인이없을때에는該當醫療關係團體의長이이를代行하여야한다.

【第3節 醫療行爲의制限】

第24條(無免許醫療業行爲等禁止) ①医療인이아니면누구든지医疗行爲를할수없으며医療人도免許된以外의医疗行爲를할수없다.

다만,다음各號의1에該當하는者는保健社會部令이定하는範圍안에서医疗行爲를할수있다.

1. 外國의医療人의免許를持한者로서一定한期間國內에滯留하는者.

2. 醫學·齒科醫學·漢方醫學 또는 看護學을 專攻하는 學校의 學生.

② 醫療人이 아니면 醫師·齒科醫師·漢醫師·助產員 또는 看護員의 名稱이나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第4節 醫療人團體】

第25條 (中央會) ① 醫師·齒科醫師·漢醫師·助產員 및 看護員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全國的 組織을 가지는 醫師會·齒科醫師會·漢醫師會·助產員會 및 看護員會(以下「中央會」라 한다)를 設立하여야 한다.

② 中央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央會가 設立된 때에는 醫療人은 當然히 그 該當하는 中央會의 會員이 된다.

④ 中央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民法中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26條 (設立許可 등) ① 中央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그 代表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定款其他 必要한 書類를 保健社會部長官에게 提出하여 그 設立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中央會의 定款에 記載한 事項은 따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 中央會가 그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求27條 (中央會의 支部) ① 中央會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釜山市와 道에 支部를 設置하여야 하며 區·市·郡에 分會를 設置할 수 있다.

다만, 그 以外의 支部를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會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 中央會가 그 支部 또는 分會를 設置한 때에는 그 支部 또는 分會의 責任者는 遷滯敘이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道知事(以下「道知事」라 한다) 또는 區廳長·市長·郡守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第28條 (協助의 義務) ① 中央會는 保健社會部長官으로 부터 醫療 및 國民保健의 向上에 관한 協助要請을 받은 때에는 이에 應하여야 한다.

② 中央會는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會員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必要한 補修教育을 實施하여야 한다.

第29條 (監督) 保健社會部長官은 中央會 또는 그 支部가 定款으로 定한 事業以外의 事業을 하거나 國民保健向上에 障碍가 되는 行爲를 할 때 또는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助의 要請에 不應한 때에는 定款의 變更 또는 任員의 改善을 命할 수 있다.

第3章 醫療機關

【第1條 醫療機關의 開設】

第30條 (開設) ① 醫療人은 이 法에 의한 醫療機關을 開設하지 아니하고는 醫療業을 行할 수 없다.

② 醫師·齒科醫師·漢醫師·助產員 또는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아니면 醫院·齒科醫院·漢醫院 또는 助產所를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醫療業을 目적으로 設立된 法人(以下「醫療法人」이라 한다)이 아니면 綜合病院·病院·齒科病院·漢方病院을 開設할 수 없다.

③ 醫師·齒科醫師·漢醫師, 또는 助產員이 醫院·齒科醫院·漢醫院 또는 助產所를 開設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 醫療法人이 綜合病院·病院·齒科病院 또는 漢方病院을 開設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境遇에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醫療機關의 開設許可를 하지 아니한다.

1.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地域別 所要病床數量 超過하는 境遇

2.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開設許可의 取消處分이 있는 날로부터 6月 以內에 그 處分을 받은 者가 醫療機關을 開設하고자 하는 境遇

3.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하는 境遇

⑤ 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開設된 醫療機關이 그 開設場所를 移轉하거나 그 開設에 관한 申告 또는 許可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第3項 또는 第4項과 같다.

⑥ 助產所를 開設하는 境遇에는 그 開設者는 반드시 指導醫師를 定하여야 한다.

第31條 (醫療機關의 開設特例) ① 第30條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者以外의 者가 그 所屬職員·從業員其他構成員(收容者를 包含한다) 또는 그 家族·健 康管理를 위하여 附屬醫療機關을 開設하고자 할 때에는 그 開設場所를 管轄하는 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開設許可에 關한 節次·條件其他 必要한 事項과 그 醫療機關의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第32條 (施設基準等) 醫療機關의 種別에 따르는 施設基準·規格·醫療人的 定員 other 醫療機關의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3條 (休業·廢業의 申告) 醫療機關의 開設者は 醫療機關을 休業하거나 廢業한 때에는 遲滯없이 管轄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34條 (宿直醫療人) 各種 病院에는 應急患者와 入院 患者的 診療上 必要한 宿直醫療人을 두어야 한다.

第35條 (醫療機關의 名稱) ①醫療機關은 第 2 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機關의 種別에 따르는 名稱以外의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다만, 綜合病院의 名稱表示는 病院으로 하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開設하는 醫療機關의 名稱은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道知事와 協議하여 따로 定할 수 있다.
②醫療機關의 名稱表示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③醫療機關이 아니면 醫療機關의 名稱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第36條 (診療科目의 表示) 醫療機關의 診療科目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의하여 表示하여야 한다.

第37條 (療醫報酬) 醫療機關이 患者등으로부터 徵收하는 醫療報酬에 關하여는 그 地域을 管轄하는 道知事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38條 (國·公立醫療機關의 特例) 第30條 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開設하는 醫療機關에 대하여 이 法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으로 特別한 規定을 할 수 있다.

第39條 (研究所등) ①醫療에 關한 研究所 또는 이와 類似한 機關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研究所 또는 이와 類似한 機關의 範圍와 許可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第40條 (管理醫師) 醫療機關의 開設者が 醫療人이 아닐 憤遇에는 그 醫療機關의 主된 醫療業務를 行할 수 있는 醫療人으로 하여금 그 醫療機關을 管理하게 하여야 한다.

【第 2 節 醫療法人】

第41條 (設立許可등) ①第30條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法人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定款 其他 書類를 갖추어 保健社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醫療法人은 그가 開設하는 醫療機關에 必要한 또는 이에 所要되는 資金을 保有하여야 한다.

③醫療法人은 그 財產을 處分하거나 定款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④이 法에 의한 醫療法人이 아니면 醫療法人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할 수 없다.

第42條 (附帶事業) 醫療法人은 그가 開設하는 醫療機關에서 醫療業務를 行하는 外에 다음의 附帶事業을 할 수 있다.

1. 醫療人 및 醫療關係者の 養成 또는 補修教育의 實施

2. 醫療 또는 醫學에 關한 調查研究

第43條 (實績報告) 醫療法人은 每會計年度 終了後 2月 以內에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運營 實績을 保健社會部長官에게 報告하고 그 副本을 備置하여야 한다.

第44條 (民法의 準用) 醫療法人에 關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中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45條 (設立許可의 取消) 保健社會部長官은 醫療法人이 다음 각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그 設立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定款으로 定한 事業 以外의 事業을 한 때.

2. 設立된 날로부터 2年 以內에 醫療機關을 開設하지 아니한 때.

3. 醫療法人이 開設한 醫療 機關이 第51條의 規定에 의하여 開設許可가 取消된 때.

4. 保健社會部長官이 監督上 發한 命令을 違反한 때.

第 4 章 醫療廣告

第46條 (誇大廣告 등의 禁止) ①醫療法人, 醫療機關 또는 醫療人은 醫療業務에 關하여 虛偽 또는 誇大한 廣告를 하지 못한다.

②醫療法人, 醫療機關 또는 醫療人이 아닌 者는 醫療에 關한 廣告를 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特定醫療기관이나 特定 醫療人の 技能診療方法·助產방법이나 經歷 또는 藥効등에 關하여 大衆廣告·暗示的記載·寫眞油印物·放送·圖案등에 의하여 廣告를 하지 못한다.

④醫療業務에 關한 廣告의 별위 其他 醫療廣告에 필요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47條 (學術目的 以外의 醫療廣告의 禁止) 醫療法人·醫療機關 또는 醫療人이라 하더라도 學術目的 以外의 目的으로豫防醫學의·臨床醫學의·研究結果機能·藥効·診療 또는 助產方法 등에 關한 廣告를 하지 못한다.

第 5 章 監 督

第48條 (指導와 命令) 保健社會部長官은 保健醫療施策

上必要하다고認定될 때 또는 國民保健에 重大한 위
해가 發生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醫療機關 또는 醫療人에 대하여 必要한 指導와 명
령을 할 수 있다.

第49條 (報告와 業務検査等) ①保健社會部長官 또는 道
知事는 醫療機關 또는 醴療人에 對하여 必要한 報告
를 명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그業務狀況 施設
또는 診療記錄簿·助產記錄簿等 관계서류를 檢查하게
하거나 關係人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여 事實을 確認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醴療人 또는 醴療機關은 이를 거부하지 못
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證明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에 관한 사항은 保健社
會部令으로 定한다.

第50條 (是正命令 등)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道知事는
醫藥기관이 第31條 第2項, 第32條, 第34條 내지 第
35條 또는 第40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一定한 期間
을 정하여 그 施設의 全部 또는 一部의 使用을 제
한 또는 禁止하거나 위반한 事項을 命할 수 있다.

第51條 (開設許可의 取消等) ①保健社會部長官 또는 道
知事는 醴療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醴療業을 정지하거나, 그 開設許可를 취소하거나
그 醴療機關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醴療機關
의 폐쇄는 第30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신고한 醴療
機關에 限하며 이를 할 수 있다.

1. 開設申告 또는 開設許可를 한날로 부터 3月 이내
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한 때.
2. 無資格者로 하여금 醴療行爲를 하게 한 事實이 있
을 때.
3.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의 職業 수행을
기회 또는 방해하거나 第48條 또는 第50條의 規定
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醴療法人이 그 設立許可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5. 第30條 第5項, 第33條 또는 第46條의 規定에 위
반한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月 이내에는 醴療機關을 開設하지 못한다.

第52條 (免許의 取消 및 再交付) ①保健社會部長官은
醫藥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第8條 第1項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된
때.
2. 금고 이상의 刑을 받을 때.

3. 第53條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처분 期間中에 醴
療行爲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4. 第11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한 免許의 조건을 이행
하지 아니한 때.

5. 면허증을 貸與한 때.

②保健社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다면 할지라도 그 取消의 原因이 된 事由가 소
멸하거나 개준의 情이 현저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
면허를 再交付할 수 있다.

第53條 (資格停止等) ①保健社會部長官은 醴藥人の 다
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大統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期間 그 면허 자격을 停止시킬 수 있
다.

1. 醴藥人으로서 甚히 그 品位를 손상시키는 行爲를
한 때.

2. 第23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한 申告를 繼續하여 3
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第1項 第1號의 規定에 의한 행위의 범위는 大統
領令으로 定한다.

③醫藥, 齒科醫院, 漢醫院 또는 助產所의 開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해당 의료기관의 醴藥業을 할
수 없다.

第54條 (醫藥監視員) ①第49條의 規定에 依한 關係公
務員의 職務를 行하게 하기 위하여 保健社會部와 서
울特別市, 釜山市 및 道에 醴藥監視員을 둔다.

②醫藥監視員은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道知事が 그 所
屬公務員中에서 任命하여 그 資格任命等에 關하여 必
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③醫藥監視員 및 其他 公務員은 그 職務上 知得한 醴
藥機關, 醴藥人 또는 患者的 秘密을 漏泄하지 못한다.

第6章 條則

第55條 (專門醫) ①醫師 또는 齒科醫師로서 惠門醫가
되고자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長官의 資格認定을 받아
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門醫의 資格認證을 받은
者가 아니면 專門科目를 標榜하지 못한다.

③專門醫의 專門科目 資格認定 資格證의 交付 및 專
門科目 標榜등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
으로 定한다.

第56條 (分野別看護員) ①保健社會部長官은 看護員에
對하여 看護員의 免許以外에 業務分野別 資格을 認定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業務分野別資格基準, 資格證 其他 必要한 사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第57條 (看護補助員) ①看護補助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道知事의 資格認定을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看護補助員은 第24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看護補助業務에 從事할 수 있다.

③간호보조원의 資格認定 및 그 業務界限등에 관하여 必要한 사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第58條 (限地醫療人) ①第2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施行前에 從前의 規定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限地醫, 또는 限齒醫, 限漢醫 (以下「限地醫療人」이라 한다)는 그 許可 받은 地域안에서 該當醫療業務를 할 수 있다.

②保健社會部長官은 限地醫療人이 그 허가받은 地域 밖에서 醫療行爲를 한 때에는 그 면허를 取消할 수 있다.

③限地醫療人의 허가지역의 變更, 其他 必要한 사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第59條 (醫療類似業者) 第2條4의 規定에 不拘하고 이 法施行前에 從前의 規定에 의하여 資格을 認定받은 接骨士, 鍼士 또는 灸士 (以下「醫療類似業者」라 한다)는 그 施術行爲를 業으로 할 수 있다.

②醫療類似業者의 施術行爲, 施術業務의 限界 및 施術所의 基準等에 關하여 必要한 사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第60條 (準用規定) 이 法中 醫療人과 醫療機關에 關한 規定은 看護補助員·限地醫療人 및 醫療類似業者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 限地醫療人에 있어서는 「醫療人」은 「限地醫療人」으로, 看護補助員에 있어서는 「醫療人」은 「看護補助員」으로, 「免許」는 「資格」으로, 「免許證」는 「資格證」으로 하며, 醫療類似業者에 있어서는 「醫療人」은 「醫療類似業者」로, 「免許」는 「資格」으로, 「免許證」으로 「醫療機關」은 「施術所」로 한다.

第61條 (醫療囑託) ①保健社會部長官 또는 道知事은 醫療施策上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 管轄區域안에 住所를 가진 醫療人에게 保健醫療業務를 囑託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醫療囑託을 받은 者는 正當한 理由없이 이를 拒絕하지 못한다.

③保健社會部長官 또는 道知事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醫療人에게 醫療囑託을 한 때에는 大統領令 또는 條例로 하는 報酬 및 旅費를 그 醫療人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第62條 (안마사) ①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者는 道知事의 資格認定을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안마사는 第24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안마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③안마사의 資格認定 및 그 業務界限에 關하여 必要한 사항은 保健社會部長官으로 정한다.

第63條 (經費補助等) 保健社會部長官은 中央會의 事業이 國民保健向上에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 또는 醫療人 醫療機關이나 醫療關係 團體에 對하여 醫療에 關한 調査研究 또는 事務를 委嘱한 때에는 이에 必要한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第64條 (權限委任) 保健社會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65條 (施行令) 이 法 行施에 關하여 必要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章 罰則

第66條 (罰則) 다음 각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5年 以下の 懲役 또는 1百萬 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 면허증을 貸與한 者.
- 醫療機關의 醫療用施設, 器材, 藥品, 其他의 器物을 破壞損傷하거나 診療를 妨害할 目的으로 醫療機關을 占據한 者, 또는 이를 教唆幫助한 者.
- 第17條, 第18條 第1項, 第2項, 第24條 第1項, 第30條 第1項, 第2項 또는 第51條 第2項, 第50條 또는 第51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第67條 (同前) 第16條, 第19條, 第20條 第1項 本文, 第19條 第1項 또는 第54條 第3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萬 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第19條, 第20條 第1項 本文 또는 第54條 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關하여는 告訴가 있어야 論한다.

第68條 (同前) 第18條 第3項 또는 第4項 第21條, 第24條 2項, 第30條 5項(다만 許可의 境遇에 限한다) 第35條 第1項 또는 第3項, 第41條 第3項 第4項, 第46條, 第47條, 第49條 第1項, 第55條 第2項 또는 第62條 第2項의 規定에 違反되는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20萬 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第69條 (同前) 第20條 第2項, 第23條 第2項, 第30條 第3項 또는 第5項 (다만 申告의 境遇에 限한다) 第33條, 第34條 또는 第36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20萬 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第70條 (兩罰規定) 法人の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

의代理人 使用人 其他 從業員이 第66條 대지 第69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處罰하는 外에 그法人 또는 個人 또는 個人에 對하여도 各本條에 規定된 罰金刑을 科한다.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後 6月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醫師·齒醫師·漢醫師·助產員·看護員 또는 看護補助員의 免許를 받은 者 또는 專門醫나 안마사의 資格認定을 받은 者는 이 法에 依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從前의 規定에 의한 免許證 또는 資格證은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內에 更新하여야 한다.

이期間이 經過한 後에는 從前의 免許證 또는 資格證은 이를 使用하지 못한다.

第3條 (同前) 이 法 施行當時 看護高等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在學중인 者는 第7條 第1號의 規定에 봉구하고 이 法 施行後 5年이내에 限하여 간호원 國家試驗에 應試할 수 있다.

第4條 (同前) 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開設된 醫院·齒科醫院·漢醫院 또는 助產所는 이 法에 의하여 開設된 것으로 본다.

第5條 (同前)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開設된 総合病院·病院·齒科醫院 또는 第31條의 規定에 該當하는 醫療機關(國公立醫療機關은 제외한다)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內에 이 法의 節次에 따라 醫療法人의 設立, 醫療機關의 開設許可 기타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6條 (同前)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醫師會, 醫科醫師會, 漢醫師會, 助產員會, 看護員會는 이 法에 依하여 設立된 것으로 본다.

第7條 (同前) 第58條의 規定에 依한 限地醫療人과 第59條의 規定에 依한 醫療類似業者는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內에 그 면허증 또는 資格證을 更新하여야 한다. 이期間이 經過한 後에는 從前의 면허증 또는 資格證은 이를 使用하지 못한다.

第8條 (同前)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公醫로 委嘱된 者는 第61條의 規定에 依한 醫療嘱託을 받은 것으로 본다.

齒 協 會 誌 寄 稿 案 內

投 稿 要 領

- ① 原稿磨勘日字；每月 10日
- ② 보 네 곳；本 協會誌 刊行室
(서울 中區 仁峴洞 1街 31의 8號
現代醫學社內 (26) 8398. 2257)
- ③ 揭載料 内容
平 版；頁當 1,400원
表英文版；頁當 1,600원
圖 案；枚當 350원
銅 版；坪當 13원
(普通 寫真1枚가 42坪임)
- 別 冊；部 当 40원
(100部 未滿은 50원)

印 刷；臺當 2,500원

寫真附圖 1面 12,000원

其他 特殊印刷 및 特殊組版을
要할 시는 그 審費를 寄稿者가
負擔함.

④ 揭載順序 및 月號는 學術委員會
에서 決定함.

⑤ 寄稿時는 아래 事項을 明示바람.

(가) 別冊所要 日字

(나) 別冊部數

(다) 組版 및 印刷上 特히 注意
를 要하는 事項.

※ 其他 學會誌 및 一般印刷 問議는
現代醫學社로 (26) 8398